

비구속성 ODA 확대를 위한 국제계약서 표준화 방안*

박 흰 일**

I. 공적 개발원조와 표준계약서	IV. 결 론
II. 공적 개발원조계약의 특수성	<부 록>
III. 공적 개발원조와 일반계약조건	OECD DAC 지도원칙

I. 공적 개발원조와 표준계약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에 상응하여 책무도 커지고 있다. 세계 시장에 한국산 상품을 많이 파는 것 못지 않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ODA)¹⁾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으로서 그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²⁾ 가입을

* KOICA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본고의 학술지 게재를 허락해주신 KOICA와 조달연구원 측에 감사드린다.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국제법무대학원 부원장, 법학박사.

1)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정부, 지자체 등의 공적 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차관(loans) 또는 무상공여(grants)를 말한다. 그 성질이 양허적(concessional)이고 적어도 25% 이상이 무상(grant element)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dopted by the DAC on 24 April 1987)(이하 "Guiding Principles"), para.2.

2)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對개도국 경제협력사업을 관장하는 OECD 산하의 위원회이다. DAC는 1960년 설립된 개발원조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의 후신으로 현재 OECD의 22개 회원국과 歐洲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구성되어 있다. 옵서버로는 IMF, IBRD, UNDP 등의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OECD 회원

서둘러 왔으며, 그에 대비하여 DAC가 권고하고 있는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에 입각한 비구속성 원조(untied aid)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³⁾

개도국에 대한 공적 개발원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하여지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집행기관{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⁴⁾}이 수원국에 해당 물자·용역을 공급할 당사자와 체결하는 국제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여러 나라와 다양한 프로젝트 또는 사업계획을 놓고 원조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바, 각종 계약문서의 표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① 공적 개발원조를 위한 국제계약도 국가가 당사자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 규정이 적용되는가.
- ② KOICA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KOICA의 「對外無償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대외무상협력사업규정”)과 동 시행세칙의 적용을 받는가.
- ③ 공적 개발원조 계약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계약조건을 따로 표준화할 수 있는가.
- ④ 이러한 일반계약조건이 보통거래약관과 비슷하다고 본다면 이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이 경우 OECD의 DAC 지도원칙⁵⁾이 국제적으로 '約款의 統制'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가.⁶⁾

국이면서 아직 DAC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 헝가리, 체코, 폴란드 등 7개국이다. DAC는 공적 개발원조의 양적 확대와 효율화를 위하여 회원국간 원조정책·기준에 대한 조정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 대개도국 자금흐름(외채 포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회원국간의 원조 분담기준을 조정한다. DAC의 주요 조직으로는 사무국인 개발협력국(DCD)과 7개의 전문 실무작업반이 있다. 공식 웹사이트는 <<http://www.oecd.org/dac/>>.

- 3) 한국은 2005년의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 선언' 서명국으로서 수원국 지원 물자 및 용역의 조달처를 원조 공여국 등 특정 국가로 제한하지 않고 국제입찰을 실시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현재 25%에 미달하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75%(최빈국·고채무빈국 대상으로는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 4)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주관하는 외교통상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이다. 개도국의 인재를 연수생으로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개도국의 교육·의료시설 지원,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내 민간단체 지원, 해외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 KOV) 파견, 해외 재난복구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 5) 각주 1) 참조. 全文은 <<http://www.oecd.org/dataoecd/10/8/31775636.pdf>>, 부록에 전문을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 6) 이를테면 공적 개발원조 계약에도 신용장통일규칙(UCP)이나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II. 공적 개발원조계약의 특수성

국가가 일방 당사자인 공적 개발원조 계약의 경우 일응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법의 적용범위가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이므로(국가계약법 제2조) 국제입찰(international bidding)에 의하지 않거나 정부가 최종이용자(end-user)가 아닌 개도국을 위한 공적 원조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도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에 대해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동법 제4조 1항 단서).⁷⁾ 그러나 국가 예산을 수반하는 거래이고 동법이 계약의 방법으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동법 제7조, 시행령 제10조) 계약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⁸⁾

KOICA의 대외무상협력사업규정을 보면 해외 현지에서의 국제입찰은 세부내용이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⁹⁾ 공적 개발원조 계약의 경우 주로 개도국을 상대로 양허적으로(concessional basis)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OECD 룰과 같은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특수성에 비추어 국가계약법이나 대외무상협력사업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따르더라도 항상 國益을 고려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며, 사적 거래의 특성 상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를 포기하고, 특히 계약과정에 있어서는

규칙(INCOTERMS)과 같은 국제규범이 관습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계약에 의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7)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의 금액기준 적용범위를 GATT-Plus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 한국은 1994.4.15 가입, 1997.1.1 발효)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르도록 하였고,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2항에서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용역계약의 범위를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정부조달협정에 의거한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02년 9월 ‘나라장터’의 전자조달을 시행에 즈음하여 정부조달 관련 법규가 일제히 정비된 바 있다.
- 8) 실제로 시행령 제1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은 그대로 따르지는 않더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 9)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제17조(국제입찰 및 현지입찰) ② 국제입찰 및 현지입찰에 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42조(국제입찰 및 현지입찰) 규정 제17조에 따른 입찰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제입찰에 관한 기준」 및 「현지입찰에 관한 기준」을 따른다.

국가계약법상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KOICA가 주체가 되어 구속성이 없는(untied) 국제물품구매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위의 시행세칙에서 위임하는 것처럼 예컨대 「비구속성 국제물품구매에 관한 기준」과 같은 특별규정의 형태를 취하면 될 것이다.

Ⅲ. 공적 개발원조와 일반계약조건

1. 일반계약조건의 의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적 개발원조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비구속성 국제물품구매에 관한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들어갈 일반계약조건을 작성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계약조건에는 무슨 조항을 넣을 수 있는가.

일반계약조건(*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이란 계약의 이행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말한다. 계약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어느 계약서에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항들이다. 일반적으로 일반계약조건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흔히 ‘보일러 플레이트’(boiler plate)라고도 일컫지만, 공적자금이 수반되는 정부조달계약에서는 관련 실정법 규정에 따라 일반계약조건을 중요시하고 있다. 예컨대 품질보증, 계약의 불이행, 지체상금, 불가항력, 준거법, 중재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계약조건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 국제거래관행에 의하여 신축성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의 규정 기타 지침의 테두리 안에서 일부 유보 조항을 설정하고 일반계약조건을 협상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일반계약조건에 대한 규제

일반계약조건이란 일방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제안한 정형화·표준화되어 있는 계약조건을 말한다. ‘보통거래약관’ 또는 ‘약관’이라고도 하며, 상대방이 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약관은 대량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금융·보험·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상세하고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그러나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고 상대방이 그와 거래를 하려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의 공정성’,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동법 제1조). 그리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통제는 행정적으로(사전통제), 사법적으로(사후통제) 행하여진다.

국제적인 무역·금융·운송 거래에 있어서도 약관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하여 현재 각종 국제적인 통일약관이 국제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데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많은 나라가 다자간 협정을 맺거나(각종 해상운송·항공운송조약)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예컨대 국제상업회의소의 INCOTERMS, 신용장통일규칙 등) 국제거래에 통용되는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양허적인 조건으로 금융을 공여하거나 원조를 하는 이른바 원조계약의 경우에도 사정은 동일하다. 비록 원조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인 이상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일방 당사국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내용으로 하게 되므로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계약조건을 작성한 당사국에 유리하고 수원국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인 개발원조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공여국의 물품만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다른 경쟁적인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원조를 통해 무역거래가 왜곡(distortion)될 수 있다.
- 공여국이 원조를 할 때 자국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효율이 떨어짐에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수원국의 경제개발목표를 뒤바꿔놓을 수 있고 부정과 야합을 조장할 수도 있다.
- 개발원조 과정에서 체결되는 조달계약에 공여국의 기업만이 참여하는 경우. 이는 공여국의 기업에 보조금(subsidy)을 지급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WTO 정선에 반한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경쟁(fair trade competition)의 원칙에 반하는 원조계약은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므로 ‘구속성’ 공적 개발원조(Tied Official Development Aid)라고 부른다. 이러한 구속성원조는 통상 수출신용(export

credit)과 결부되어 행하여지므로 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이와 같은 결합형태를 제휴금융(Associated Financing)¹⁰⁾이라 하여 똑같이 규율하고 있다.

비록 회원국들에 한하여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지만 DAC에서는 그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공적 개발원조를 할 때 따라야 할 지침을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¹¹⁾으로 정하여 권고하고 있다. DAC는 수원국들 중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과 高債務貧國(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에 대하여는 원조자금을 지원받아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속성이 없는(untied) 개발원조¹²⁾를 원칙으로 하고, 2001년에 권고안을 공포한 바 있다.¹³⁾

그러나 비구속성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원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구속성 원조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비구속적인¹⁴⁾ 개발원조(Partially Untied ODA)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지도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DAC에서 회원국들이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를 할 때 따르도록 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은 다음과 같다.

10) 제휴금융이란 공적 개발원조(ODA)와 함께 수출신용 등의 금융 패키지가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혼합신용(mixed credit), 혼합금융(mixed financing), 협조융자(joint financing), 평행융자(parallel financing) 또는 단일의 통합거래(single integrated transactions)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제휴금융의 특징은 양허적인 구성부분(concessional component)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비양허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일부 또는 전부의 금융 패키지가 효과면에서 구속성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비구속적이라는 점과, 양허적 자금을 쓰는 것은 그와 연결된 비구속적인 구성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DAC Guiding Principles paras.3-4.

11) 각주 5) 및 부록 참조.

12)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Untied ODA)는 실질적으로 모든 개도국 및 OECD 회원국들로부터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차관 또는 무상공여를 말한다. 원조를 받는 수원국 현지에서 비용조로 지출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비구속적(untied)인 것으로 본다. DAC Guiding Principles Guiding Principles para.5.

13) 2001년에 처음 나온 DAC의 공적 개발원조 비구속화 권고안은 2006년에 이어 2008년 7월 최신 수정판이 공포되었다. 이에 의하면 최빈국과 高債務빈국을 대상으로 하던 것은 2015년까지 그 밖의 모든 나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DAC 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LDCs and HICPs, July 2008. 全文은 <<http://www.oecd.org/dataoecd/61/43/41707972.pdf>> 참조.

14) 부분적으로 비구속적이라는 것은 공적 개발원조에 의한 수원국의 조달계약에 사실상 공여국과 거의 모든 개도국을 포함한 제한된 수의 국가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DAC 지도원칙에 있어서 구속성 공적 개발원조(Tied ODA)란 실제로는 공여국으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공여국과 개도국 그밖에 지리적으로 제한된 국가만 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차관 또는 무상공여를 말한다. DAC Guiding Principles para.5.

- 투명한 운영
- 사후심사의 철저
- 수출신용지원지침 협약의 준수
-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사업계획의 우선 지원
- 개발효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협조용자
- 수원국의 경제개발단계, 원리금상환능력에 맞게 조정
- 최빈국은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
- 모범 조달관행의 존중
- 개발원조 제안 시 충분한 정보의 제공

그러므로 어느 개발원조가 비구속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비구속적인 경우에는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원조제의를 할 때 분명히 명백하게 조달 참가자격이 있는 국가를 알려야 한다. 개도국에 구속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비구속적인 공적 개발원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DAC 의장에게, 다른 DAC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DAC 의장을 통하여, 조달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개도국을 통보하여야 한다.¹⁵⁾

우리나라가 DAC 회원가입을 앞두고 공적 개발원조를 비구속성 원칙에 따라 집행한다면 국제경쟁입찰(ICB)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우선 국제경쟁입찰과 현지조달 방식을 병행하되, KOICA 본부에서 국제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쟁입찰이 효과적이지 않은 소규모 계약¹⁶⁾의 경우 그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수원국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다.

3. 일반계약조건의 구성

현재 조달청 「외자구매업무편람」 및 홈페이지<www.pps.go.kr>에 올려져 있는 일반계약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2005.12.22 개정)은 3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편의상 그 연원 및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5) *Ibid.*, para.7.

16) 사업금액이 SDR70만(10억원) 미만인 건축 및 기자재 입찰 프로젝트이거나, SDR13만(1.9억원) 미만인 투자관련 기술협력(IRTC)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계약 총칙에 해당하는 조항	Scope, Definitions, Language, Computation of Time, 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	P-Bond, General Specifications, Warranty, Variation of Quantity, Inspection, Drawings and Manufacturer's Instructions, Approval of Manufacturing Drawings, Sub-Contract, Paintings and Protective Coating, Packing and Identification, Packing List, Marking, Instruction Manual, Patent, Price Control, Payment, Shipping Readiness
국제계약의 일반 조항	Liquidated Damages, Insurance, Delivery, Shipping Advice, Freight,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Defaults, Force Majeure, Jurisdiction or Arbitration, Refunds, Expenses, Governing Law, Interpretation and Trade Terms
일반 국제계약에 비추어 추가해야 할 조항*	Damages, Confidentiality, Notice, Severability, Non-Waiver, Entire Agreement, Modification

* 정부계약인 경우에는 그 특수성에 따라 다음의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가격의 적정성 보장, 상계(set-off) 등 구상무역의 이행, 부품의 계속 공급 등 후속지원의 보장 등

위의 조달청 외자구매업무편람에 수록된 일반계약조건을 일단 '비구속성 국제물품구매계약'에 포함시킨다고 하고, 다음의 가상사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사 례>

우리나라는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최빈국으로 분류한 미얀마에 총사업비가 20억원에 달하는 첨단 컴퓨터 교육시설과 3년간의 운영비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건 원조를 DAC 권고에 따라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ODA)로 지원할 경우 그 계약서에는 무슨 조항을 담아야 하는가? 우리나라가 DAC 회원국이 되어 이러한 개발원조가 자주 행하여질 터이므로 표준계약서안을 만들기로 한다면 어떠한 조항을 일반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가?

비구속성 개발원조 계약이므로 기자재의 조달 및 시설운영을 둘러싼 국제경쟁입찰(ICB)이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외자구매업무편람에 수록된 일반계약조건을 중심으로 본건 원조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조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범 례 : - 조달청 일반계약조건외 항목별 설명

⇒ 당해 조항이 본건 계약에 필요한지 또는 수정을 요하는지에 관한 코멘트

o Scope (적용범위)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apply to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 및/또는 용역에 적용함

⇒ 제목을 Purpose(목적)로, 주체는 PPS(조달청) → 발주자(KOICA)로 각각 바꾸고, 발주자가 미얀마 정부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한국 기업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국제경쟁입찰(ICB)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Definitions (정의)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Government, Supplier, Contractor, Commodity, End-User, Month"

- 계약(Contract), 공급자(Supplier), 최종이용자(End-User) 등의 용어를 정의함

⇒ 본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맞게 컴퓨터 교육시설 등의 용어를 추가로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림

o Language (언어)

- 계약서류의 언어는 영어로 원칙으로 함

⇒ 필요함

o Computation of Time (기간계산)

- 曆(calendar)을 기준으로 하고, 만기가 공휴일이면 그 이튿날로 함

⇒ 필요함

o 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계약서류의 종류와 적용순위)

- 입찰서, 제안요청서(RFP), 일반계약조건, 특약사항 등의 적용 순서를 정함

⇒ 사안에 따라 다양한 계약서류가 있는 경우에 필요함

o P-Bond (공사이행보증서)

- 공급자, 시공사로 하여금 총사업비의 10%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케 함

⇒ 필요함

o **General Specifications (물품의 규격)**

- 본건 계약의 목적인 물품 및 부품의 규격(spec)을 기술함
⇒ 필요함

o **Warranty (보증)**

- 목적물의 품질을 보장하며 하자 있는 물품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환·보수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함
⇒ 필요함

o **Variation of Quantity (일정 수량)**

"No variation in the quantity of any item called for by the contractor will be accepted unless such variation results from conditions of loading, shipping or packing, or allowance in manufacturing processe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 공급 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의 변동이 없음
⇒ 필요함

o **Inspection (품질검사)**

- 발주자는 독립된 검사인을 선정하여 품질을 검사하게 하고, 품질미달 물품은 수량을 거절할 수 있음
⇒ 필요함

o **Drawings and Manufacturer's Instructions (제작도면 및 제작자의 지시사항)**

- 본건 계약이 제작도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내역을 기술함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Approval of Manufacturing Drawings (제작도면의 승인)**

- 제작 전에 도면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소정 부수를 제출함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Sub-Contract (하도급)**

"No sub-contract shall be made by the contractor with any party other than those who are described in the contract, as supplier or manufacturer for

furnishing commodity contracted,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PPS."

- 발주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서상의 시공사 외에는 하도급을 불허함
⇒ 필요함

o Paintings and Protective Coating (도색 및 보호피막)

- 목적물의 재질에 따라 도색 또는 보호피막으로 처리함
⇒ 필요함

o Packing and Identification (포장 및 식별)

- 포장은 수출용으로 하고, 계약번호, 최종이용자의 이름을 붙임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포장 단위로 그 내용물의 명세를 기재하여 첨부함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Marking (표시)

- 포장 내용물을 일정한 요령으로 표시함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Instruction Manual (설치 및 사용설명서)

- 목적물 및 그 부품의 설치, 사용을 위한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함
⇒ 필요함

o Patent (특허)

- 시공사는 발주자가 지적권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함
⇒ 필요함

o Price Control (가격통제)

"The contractor shall guarantee that the stated price does not exceed the regular price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by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Violation of this clause will entitle PPS to rescind the contract and/or to claim a refund for the excessive price paid."

- 시공사는 계약가격이 정상가격을 넘지 않음을 보장함
⇒ 필요함

o Payment (대금 지급)

- 발주자는 신용장 발행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함
⇒ 신용장 이외의 지급방법도 마련할 필요 있음

o Shipping Readiness (목적물의 선적)

- 공급자는 선적 준비가 끝나는 대로 즉각 발주자에게 통보함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Liquidated Damages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

- 목적물의 인도·설치가 지연될 경우 소정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함
⇒ 지체상금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손해배상(Damages)에 대한 규정도 필요함

o Insurance (보험)

- 목적물 인도조건이 CIF인 경우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함
⇒ 필요함

o Delivery (목적물의 인도)

- 목적물의 인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선적을 하면 됨
⇒ 필요함

o Shipping Advice (선적통지)

-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선적개시 통지서를 발주자에게 전신 또는 팩스로 송부함
⇒ 필요함

o Freight (운임)

- 운임은 공급자에게 지불함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운송서류의 제출)

- 공급자는 소정의 선적서류를 등기 항공우편으로 발주자에게 송부함
⇒ 필요함

o Defaults (채무불이행)

- 시공사가 소정 기일내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P-Bond를 몰취함
- ⇒ 필요함

o Force Majeure (불가항력)

- 시공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경우 지체상금 기타 손해배상, P-Bond의 몰취를 당하지 아니함
- ⇒ 계약의 이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좀더 자세히 규정할 필요 있음

o Jurisdiction or Arbitration (재판관할 또는 중재)

- 당사자간의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는 경우와 중재의 합의가 있는 경우
- ⇒ 발주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 가지만 선택하여 규정하도록 함

o Refunds (환불)

"Whenever the bidder receives from his/her supplier a discount, adjustment credit and /or refunds, he/her will notify promptly PPS's Administrator of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nd the date of receipt and will make refunds thereof to PPS."

- 입찰자가 공급자로부터 할인 또는 환불을 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알리고 받은 금액을 환불함
-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Expenses (경비)

- 시공사가 국외에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사안에 따라 필요함

o Governing Law (준거법)

- 준거법은 한국법
- ⇒ 필요함

o Interpretation and Trade Terms (무역거래조건의 해석)

-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계약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발주자의 의견을 따르고 무역거래조건은 INCOTERMS의 기준에 의함¹⁷⁾
- ⇒ 필요함

본건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항에 추가하여 다음 조항들도 일반계약조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o Training and Education (교육훈련)

- ⇒ 본건과 같이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상가동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o Damages (손해배상)

- ⇒ 본건 계약위반 시에 발주자가 입은 실제 및 특별손해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계약의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있음.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는 제외함

o Confidentiality (비밀유지의무)

- ⇒ 본건과 같이 첨단기술과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영업비밀과 노하우는 비밀로 하고, 발주자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도록 함

o Notice (통지)

- ⇒ 본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연락처와 통지방법을 상세히 기술함

o Severability (계약의 분리가능성)

- ⇒ 계약의 일부가 무슨 사정으로 무효·취소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함

o Non-Waiver (불포기)

- ⇒ 발주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

17) 무역거래조건에 관하여는 거의 예외 없이 ICC의 INCOTERMS 2000을 적용하고 해석할 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o **Entire Agreement (완전한 계약)**

⇒ 구두증거를 배제한다는 본 조항은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는 이상 불필요함

o **Modification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o **Supply of Parts (부품의 안정적 공급)**

⇒ 공급자는 본건 기자재의 부품을 계약 종료 후에도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함

IV. 결 론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공적 개발원조를 할 때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비구속성 국제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가며 필요한 계약서 조항과 불필요한 조항을 스크리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계약조건은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건설용역 또는 기술용역 제공의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계약서의 구조는 계약체결의 당사자와 날짜, 동기를 규정한 전문(Preamble, Recitals)과 일반계약조건(General Conditions),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s) 그리고 별표(Schedule), 첨부문서(Exhibit, Appendix)로 하되, 일반계약조건은 우리 측이 계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주로 개도국의 사업체여서 법률비용을 많이 들일 수 없는 데다 지금까지 KOICA가 체결한 국제계약이 비교적 단순하였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미얀마의 가상사례의 경우 예컨대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유고사태로 인하여 미얀마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본건 거래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계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이 일반계약조건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적 개발원조 계약에 있어서도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반계약조건을 적법하게 포함시킬 수 있으나, DAC 지도원칙에 따라 계약이행 및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英美계약서와 같은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서약(Covenants) 조항을 두는 것이 계약서를 간단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¹⁸⁾ 예컨대 앞에서 살펴본 일반계약조건에 있어서 다소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Variation of Quantity(일정 수량), Inspection(품질검사), Drawings and Manufacturer's Instructions(제작도면 및 제작자의 지시사항), Approval of Manufacturing Drawings(제작도면의 승인), Sub-Contract(하도급), Paintings and Protective Coating(도색 및 보호피막), Packing and Identification(포장 및 식별), Packing List(포장명세서), Marking(표시), Instruction Manual(설치 및 사용설명서) 등의 항목은 공급자 또는 시공사, 경우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진술하고 보장하거나 서약하는 규정으로 만들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¹⁹⁾

아울러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개발원조의 경험이 많은 미국, 일본, EU 회원국들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참조하되 우리나라 조달청이나 KOICA가 축적한 모범관행(best practices)도 조문화하여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8) 일반계약조건에 공급자, 시공사, 발주자 별로 진술 및 보장, 서약 조항을 두고,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면 될 것이다.

- 공급자는 DAC 지도원칙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국가(eligible country)에 설립되었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갖고 있음을 진술한다(Representation of capacity).
- 공급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목적물의 수량이 변동되지 아니할 것임을 보장한다(Warranty of no variation in quantity).
- 시공사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지위,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Covenant of no assignment).

19) 본래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조항은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거래 계약서에서나 볼 수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이고 사실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M&A나 프로젝트 금융 계약서, 사업실시협약서 등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582면. 진실에 반하는 진술·보장을 하거나 작위·부작위의 서약을 위반하는 것은 곧바로 채무불이행 사유(events of default)가 되기 때문에 그 효과도 상당히 강력한 편이다.

참고 문헌

박환일, “컨설팅계약을 둘러싼 법률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06.

_____, 『국제거래법 - 케이스와 서식』,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996.

석광현,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조달청, 『외자구매업무편람』, 2007.6.

한국산업은행 법무실, 『국제금융 Documentation의 이해(증보판)』, 한국산업은행, 2008.

한국수출입은행 법무실, 『영문 국제계약해설 개정증보판』, 한국수출입은행, 2004.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dopted by the DAC on 24 April 1987)
<<http://www.oecd.org/dataoecd/10/8/31775636.pdf>>

Philip R. Wood, *International Loans, Bonds and Securities Regulation*, Sweet & Maxwell, 1995.

조달청 웹사이트 <<http://www.pps.go.kr/>>

조달청 나라장터 웹사이트 <<http://www.g2b.go.kr/>>

한국국제협력단 웹사이트 <<http://www.koica.go.kr/>>

OECD 개발원조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oecd.org/dac/>>

주제어: 공적 개발원조, 대외무상협력사업, 비구속성 계약, 국제경쟁입찰,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의 특수조건, 진술 및 보장, 서약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overseas grant and cooperative works, untied agreement,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venants

How to Standardize the International Procurement Contract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ark, Whon-II*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ly required to provide mor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less developed countries in proportion to its economic growth. Korea's proposed admission to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under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as propelled the implementation of untied aid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 recommended by DAC.

In general, ODA is actually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gency, i.e.,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in Korea, which makes and enters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with a supplier to procure the goods, services or construction for a host country. In this regard, standardized agreements are believed to facilitate the ODA process.

This article examines the following issues:

- While the ODA agreements are executed by the government agency, is it obliged to comply with the Act relating to an Agreement with the State as one Party, and KOICA's internal regulations?
- Is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GCC) apt to be standardized and useful in performing ODA agreements?
- What should we do when GCC amounts to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do the DAC guiding principles function as the controller of general terms?

* Associate Professor of Law at Kyung Hee University.

It is advisable to screen and elect the necessary provisions out of a number of contracts in the past when untied aid is implemented by means of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n principle, the agreement can be structured by the contract form with preambl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special conditions of contract and necessary schedules, exhibits and/or appendices, as simple and concise as possible insofar as the contract is legally under control. As a matter of fact,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is guided by DAC principles by ensuring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transparency of the outcome. In this connection,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best ODA practi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World Bank as well a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KOICA in Korea.

< 부 록 >

OECD DAC 지도원칙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1987년 4월 24일 회원국이 제휴금융(Associated Financing)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를 제공할 때 따라야 할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21)*}

I. 전 문

1. DAC 회원국들은 원조와 무역거래가 왜곡(distortion)될 위험을 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Tied and Partially Untied) 공적 개발원조(ODA)가 최우선적인 개발목표의 달성을 촉진하고 공정 거래경쟁(fair trade competition)에 부합됨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도원칙을 채택한다. 이러한 원칙은 공적개발원조의 모범사례(good practice)에 속하지만 원조 및 무역거래의 왜곡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다.

II. 용어의 정의

2. 공적 개발원조란 정부, 지자체 등의 공적 기관 또는 그의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자원(resources)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 i)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관리될 것
 - ii) 성질이 양허적(concessional)이고 적어도 25% 이상이 무상(grant element)으로 제공될 것. 그 계산에 있어서 할인율은 10%로 한다.

* See full text at <<http://www.oecd.org/dataoecd/10/8/31775636.pdf>> or attachment hereof.

3. 개도국과의 제휴금융(Associated Financing)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i) 공적 개발원조

ii) 최소한 25% 이상의 무상지원이 포함된 그밖의 공적 지원(Other Official Flows)

iii) 공적으로 지원되는 수출신용, 25% 이내의 무상지원(grant element)이 포함된 그밖의 공적 지원 기타 자금

4. 제휴금융의 거래는 혼합신용(mixed credit), 혼합금융(mixed financing), 협조융자(joint financing), 평행융자(parallel financing) 또는 단일의 통합거래(single integrated transactions)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의 주된 특성은 양허적인 구성부문(concessional component)이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비양허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비양허적이거나 양허적인 부분의 하나 또는 전체의 금융 패키지가 효과면에서 구속성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비구속적이라는 것이며, 양허적 자금을 쓰는 것은 그와 연결되어 있는 비구속적인 구성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제휴(association) 내지 '사실상의' 연결(linkage in fact)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조를 받는 기관과 주는 기관 사이의 비공식적인 양해사항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공여국이 공적 개발원조를 행함으로써 금융 패키지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Untied ODA)는 실질적으로 모든 개도국 및 OECD 회원국 들로부터의 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차관(loans) 또는 무상공여(grants)를 말한다. 원조를 받는 수원국 현지에서 비용조로 지출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비구속적(untied)인 것으로 한다.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Partially Untied ODA)는 사실상 공여국과 실질적으로 모든 개도국을 망라하는 제한된 국가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차관 또는 무상공여를 말한다.

본 지도원칙에 있어서 구속성 공적 개발원조(Tied ODA)는 실제로는 공여국으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거나 또는 위의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 항목에 기술된 사항 이외에 지리적으로 제한된 조달참가자격을 보여주는 조달양식(procurement modalities)을 따라야 하는 차관 또는 무상공여를 말한다.

6. 다음의 거래는 사실상 구속성이 있거나 부분적 비구속성이 있다고 한다.

-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에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는 공식 또는 비공식의 양해가 있는 경우
 - 개발원조위원회와 공적 수출신용지원 지침에 관한 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참가국이 그러한 구속성 또는 부분적 비구속성 거래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래관행을 포함하는 경우. 어느 금융거래에 위의 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공여국이 그러한 관행이 비구속적이라거나 부분적으로 구속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어느 거래가 비구속적이라거나 부분적으로 비구속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공여국이 수원국에게 원조제의를 할 때 분명히 명백하게 조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국가를 알려야 한다. 개도국에서의 조달을 위한 쌍무 개발용자의 비구속성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Untying of Bilateral Development Loans in Favor of Proc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에 따라 부분적으로 비구속적인 공적 개발원조를 제공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에게, 또한 그를 통하여 다른 DAC 회원국들에게 조달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개도국을 통보하여야 한다.

Ⅲ. 지도 원칙¹⁾

8. 회원국들은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투명(transparency)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다.
9. 회원국들은 상호간에 개별적인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 거래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후심사(ex post examination)를 하기로 한다.
10. 회원국들은 별첨 공적 수출신용지원 지침에 관한 협약의 규정²⁾에 반하는³⁾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 거래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제휴금융의 경우에는 공적 개발원조의 요소를 포함한 거래에 대하여 제9항 내지 제17항이 적용된다.

2) 허용 가능한 양허의 최저한도(minimum permissible concessionality level)에 관한 협약의 규정 및 그의 계산은 ODA의 정의나 ODA 지급 및 약정의 보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ODA에 속하는 것은 할인율을 10%로 계산하여 무상공여 부분이 25%에 달할 때부터이며, ODA 약정의 무상공여 부분도 10%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때 계속 그러한 계산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제휴금융거래의 공적 개발원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로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다만, 기술협력 부분이 전체 제휴금융거래 가치의 3% 이하 또는 1백만달러 이하 중 낮은 쪽에 속하여야 한다.

11. 회원국들은 제후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를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 및 개발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평가된 사업계획에 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지도원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 i) 1987년 및 그 이후 요구되는 동안 다른 DAC 회원국 및 OECD 사무국에 대하여 (a) 제후금융, (b) 무상공여부분이 50% 미만인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 그리고 (c) (b)와 다른 경우에는 공적 개발원조가 “매칭”용으로 사용되는 예외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무상공여부분이 50% 이상인 구속성 및 부분적 비구속성 ODA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및 사업계획을 선정하고 설계할 때 이를 수립하고 적용할 것
 - ii) 제후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프로젝트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개발효과가 나도록 구속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정기적인 DAC 제후금융 리뷰에 게재하는 등 철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것
 - iii) 개발원조의 금융지원에 관한 실무작업반(Working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원조가능액 또는 무역거래의 왜곡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후금융이나 구속성 또는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의 자금지원을 받은 개별적인 프로젝트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동 보고서는 프로젝트 선정 및 평가절차를 포함하여 실무작업반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동 보고서는 요청을 받는 대로 작성하여 정기적인 DAC 제후금융 리뷰에 게재하여야 한다.
 - iv) 요약 보고서는 DAC 제후금융 리뷰에서 다른 다음에 개최되는 DAC 고위급회담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적 개발원조의 자금지원을 받은 모든 프로젝트와 사업계획의 개발우선순위(developmental priority)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회원국들은 제후금융 또는 무상공여부분이 50% 미만인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의 자금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또는 사업계획의 개발우선순위를 심사할 때 다음 사항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i) 수원국의 금융 및 경제계획 중앙기구의 승인을 받은 투자의 일부, 공적 지출계획의 일부일 것
 - ii) 대외원조조정(international aid coordination arrangements)의 일환으로 심사를 받거나 일반적인 승인을 받을 것

- iii) 국제개발금융기구와의 협조용자 형태로 이루어질 것
 - iv) 국제개발금융기구나 다른 DAC 회원국이 지원을 고려하였거나 개발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로 지원을 거절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심사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14. 회원국들이 개별 개도국이나 개도국 그룹의 사정에 맞게 사안별로 원조의 조건을 정하도록 한 DAC 추천 원조의 일반조건(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에 따라 회원국들은 제휴금융의 조건을 수원국의 경제상황, 개발단계, 원리금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15.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라 제휴금융이나 구속성 또는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가 유엔이 지정한 최빈국(LDC)에 지원되는 범위에서 회원국들은 거래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회원국들은 경제사정이 좋은 개도국의 경우에는 전체 ODA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그리고 제10항에 따라 기술협력 이외의 개별 거래로서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를 사용하거나, 제휴금융을 위한 공적 개발원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로 한다.
 16. 회원국들은 DAC가 승인한 공적 개발원조의 모범조달관행(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그에 포함된 약정사항(undertakings)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7.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의 사용을 제안함에 있어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계약결정을 하기 전에 회원국들은 관리상의 접촉점(contact points)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고 다른 회원국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제외에 관한 정보요청에 충분히 즉각적으로 회보하기로 한다.

IV. 통계보고에 관한 의무사항

18. 회원국들은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를 포함한 신용보고 시스템(Creditor Reporting System)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즉각적으로 준수하기로 약속한 것을 재확인한다. 특히 회원국들은 무상원조 또는 차관약정(금액, 차관조건, 구속성 여부 및 목적을 명시)에 서명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a) 개별 ODA 무상원조 및 차관(제휴금융에 사용되는 금액을 명시), b) 개별적인 기타 공적지원(Other Official Flows)의

무상원조 및 차관(제휴금융에 사용되는 금액을 명시), c) 제휴금융에 사용되는 공적으로 지원되는 개별 수출신용을 통보하기로 한다. 신용보고 시스템에서 기술협력 원조액을 보고하는 것은 제휴금융에 사용되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무상공여는 수원국 별로 그 합계액만 표시할 수 있다.

V. 심사 및 평가

19. 회원국들은 개발원조의 금융지원에 관한 DAC 실무작업반을 통하여 제휴금융과 구속성 및 부분적인 비구속성 공적 개발원조에 관한 그들의 정책 및 관행을 위에서 말한 지도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사할 것에 동의한다. 회원국들은 심사에 필요한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원조위원회에 이 분야에서 채택된 새로운 주요 정책을 통보하기로 한다. 지도원칙 자체는 각 회원국의 경험에 비추어 심사대상이 될 것이다.

VI. 수출신용 및 신용보증에 관한 OECD 회원국 및 수출신용협정참가국과의 협력

20. 개발원조의 금융지원에 관한 DAC 실무작업반은 무역위원회의 수출신용 및 신용보증에 관한 그룹 및 공적 수출신용지원 지침에 관한 협약 참가국의 관련된 작업을 긴밀하게 추적하고 이들 그룹이 요구하는 대로 협력하기로 한다.

DAC Guiding Principles

DAC Guiding Principles for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dopted by the DAC on 24 April 1987)

I. Preamble

1. Recognizing the need to avoid the risk of distortion of aid and trade, DAC Members undertake to ensure that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ill promote priority developmental objectives and be consistent with fair trade competition and to this end adopt the Guiding Principles set out below. Most of these principles constitute good practice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generally but they are particularly important where there may be a risk of aid and trade distortion.

II. Definitions

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s defined as those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provided by official agencies, includ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s, or by their executive agencies, each transaction of which meets the following tests:
 - i) It is administered with the promotion of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developing countries as its main objective, and
 - ii) It is concessional in character and contains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percent. To calculate the grant element of an ODA transaction, a 10 percent discount rate is used.

3. *Associated Financing* with developing countries associates in law or in fact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 i)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ii) Other Official Flows with a grant element of at least 25 percent;
 - iii)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other official flows or other funds with a grant element of less than 25 percent.
4. Associated Financing transactions may take various forms—such as "mixed credit," "mixed financing," "joint financing," "parallel financing," or single integrated transactions. Their main characteristic is that the concessional component is linked in law or in fact to the non-concessional component, that either the non-concessional or the concessional component or the whole financing package is in effect tied or partially untied and that the availability of concessional funds is conditional upon accepting the linked non-concessional component. In determining association or linkage "in fact," d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existence of informal understandings between the recipient and the donor authority and the intention by the donor through the use of ODA to facilitate the acceptability of a financing package.
5.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defined as loans or grants which are freely and fully available to finance procurement from substantially all developing countries and from OECD countries. Funds provided to finance the recipient's local costs are also defined as untie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defined as loans or grants which are in effect tied to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from the donor country and from a restricted number of countries which must include substantially all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urposes of these Guiding Principles, 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defined as loans or grants which are either in effect tied to procurement of goods

and services from the donor country or which are subject to procurement modalities implying limited geographic procurement eligibility other than those described above under Partially Untied.

6. A transaction is defined to be *in effect* tied or partially untied if:
 - It is the subject of a formal or informal understanding to that effect between the recipient and the donor country, or
 - It involves practices which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and the Participants in the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may determine to result in such tying or partial untying. In cases of substantial doubt as to whether a certain financing practice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definition, the donor country shall furnish evidence in support of any claim that such a practice is untied or partially untied.
7. For a transaction to qualify as untied or partially untied, respectively, the donor has to inform the recipient, at the time of the aid offer, clearly and explicitly of the countries which are eligible for procurement. In accordance with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Untying of Bilateral Development Loans in Favor of Procur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Members wishing to exte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ill notify the Chairman of the DAC, and through him other DAC Members, of those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eligible for procurement.

III. Guiding Principles¹⁾

8. Members confirm that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hould be the subject of greatest possible transparency.

1) As regards Associated Financing, paragraphs 9 to 17 apply to transactions containing an eleme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9. Members will continue the mutual ex post examination of individual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ransactions.
10. Members will refrain from extending commitments of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 transactions which do not comply²⁾ with the rules of the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set out in the Annex.³⁾
11. Members undertake to confine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priority projects and programs which are carefully appraised against developmental standards.
12. In implementation of these principles, Members undertake:
 - i) To establish and make available, during 1987 and subsequently as required, to other DAC Members and the OECD Secretariat the criteria for the selection and design of projects and programs financed by (a) Associated Financing, (b) Tied or Partially Untied ODA with a grant element of less than 50 percent, and (c) where different from (b) above, Tied or Partially Untied ODA with a grant element of 50 percent or more, including the exceptional conditions under which ODA is being used for "matching";
 - ii) To conduct thorough ex post evaluations of representative selections of projects and programs financed by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 including the effects of tying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to make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s available for the regular DAC Associated Financing Reviews;

2) Associated Financing transactions whos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mponent consists solely of technical cooperation are exempted from this rule, provided that the technical cooperation component remains below 3 percent of the total value of the Associated financing transaction or below \$1 million, whatever is lower.

3) The Arrangement rules concerning the minimum permissible concessionality level and its calculation affect neither the ODA definition nor the reporting of ODA disbursements and commitments: the threshold for ODA eligibility remains a grant element of 25percent, calculated with a discount rate of 10 percent, and the grant element of ODA commitments continues to be calculated using a 10 percent discount rate.

- iii) In response to a request by Members of the Working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 to prepare thorough reports on individual projects and programs financed by Associated Financing or Tied or Partially Untied ODA to determine possible aid or trade distortion. These reports shall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established by the Working Party which shall include project selection and appraisal procedures. Such reports shall be prepared promptly after the request has been received and be made available for the regular DAC Associated Financing Reviews;
 - iv) A summary of the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next DAC High Level Meeting following the DAC Associated Financing Review at which they were considered.
13.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important in examining the developmental priority of all projects and programs financed with ODA. Members undertake to pay particular attention, when examining the developmental priority of a project or program to be financed with Associated Financing or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ith a grant element of less than 50 percent, to these considerations:
- i) It is part of investment and public expenditure programs already approved by the central financial and planning authorities of the recipient country;
 - ii) It has been the subject of review and general endorsement in such international aid coordination arrangements as may exist;
 - iii) It is being co-financed with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 iv) Particular care will be applied in the examination of projects where evidence exists that they had been considered and rejected by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or another DAC Member on grounds of low developmental priority.
14. In conformity with the DAC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 which stipulates that Members should relate the terms of aid on a case-by-case basis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developing country

or group of countries, Members undertake to tailor also the terms of Associated Financ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stage of development and debt servicing capacity of the recipient country.

15. In line with this general principle, to the extent that Associated Financing or Tied or Partially Untied ODA is provided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Members will ensure that the transaction takes place on favorable terms. Members undertake to restrain the use of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 and of ODA for Associated Financing in case of stronger developing countries, both as a proportion of the total ODA program and, subject to paragraph 10, for individual transactions, apart from technical cooperation.
16. Members reconfirm the importance of the "Good Procurement Practices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pproved by the DAC and the undertakings contained therein.
17. In order to ensure full transparency in the proposed use of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specially prior to contract decisions, Members will use the system of contact points in their administrations actively and respond fully and promptly to requests for information by other Members on aid offers for particular projects.

IV. Statistical Reporting Requirements

18. Members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comply fully and promptly with the standard requirements of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which includes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particular, Members will notify within two months of the signature date of the grant or loan agreement (specifying amounts, financial terms, tying status and purpose): a) individual ODA grants and loans, specifying those used for Associated Financing; b)

individual OOF ("Other Official Flows") grants and loans, specifying those used in Associated Financing; and c) individual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used in Associated Financing. Under the Creditor Reporting System, reporting of technical cooperation grants is voluntary unless they are used in Associated Financing. Low value grants (less than \$10,000) may be grouped for individual recipients.

V. Review and Appraisal

19. Members agree to review periodically, through the DAC Working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concerning Associated Financing and Tied and Partially Untied ODA against the Guiding Principles set out above. Members will provide information on policies and procedures as required for the review and will inform the DAC of any significant new policies adopted in this area. The Guiding Principles themselves will be the subject of review in the light of experience.

VI. Cooperation with the OECD Group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and with the Participants in the Export Credit Arrangement

20. The DAC Working Party on Financial Aspects of Development Assistance will follow closely relevant work of the Group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of the Trade Committee and the Participants in the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and cooperate with these Groups as required.